

의안번호	2207160
의 퇴 인	김선교 의원
회 답 일	2025. 2. 21.
추계번호	24A6464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(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)	국가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0조(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(안 제20조제5항 신설)
 -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원 사업은 하지 않고 있으나,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·운영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해 구체적인 대상, 요건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재정지원 규모를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은 “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”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

- 이에 개정안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에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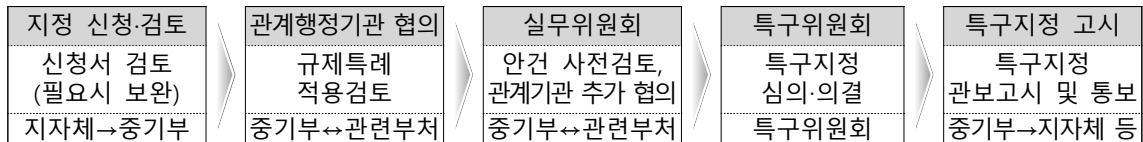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nabo.go.kr

[참고자료]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개요¹⁾

□ 배경 및 절차

- (배경) 지역 균형발전,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 (지역특구법, '04~)
 -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·세제 지원은 없음
- (절차)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가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 → 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

< 지역특구 지정절차 >



□ 규제특례 현황

- 「지역특구법」 상 총 129개 규제특례(59개 개별법) 중 해당 지자체의 특화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특구 내 적용 가능

< 주요 내용 >

구분	적용 특례	구분	적용 특례
일반 (62개)	옥외광고물 표시·설치	토지 이용 (54개)	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
	도로통행 제한		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
	농지의 위탁경영 / 임대·사용		농업진흥지역 해제
	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		도시계획시설의 결정
	도로점용 허용	이양 (13개)	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
	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		식품 표시기준 완화
	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		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

□ 지정 현황

- 현재 175개 특구*(138개 시군구)가 지정·운영 중('24.12월 기준)
 - '04년 제도 도입 이후, 228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53개 특구가 해제·통합

< 지역별 특구현황 >

구 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합계
특구(개)	10	6	5	2	3	1	3	20	13	16	16	13	30	21	14	2	175

1) 중소벤처기업부 자료